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1.5.1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5.1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1.5.12)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펀드코드 : 36613)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법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채권 및 유동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투자, 운용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국고채, 통안채, 공사채, 은행채(신용등급 AA-이상) 중심으로 투자하고, 유동자산에의 투자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AA-이상) 및 정기예금, CP(A2-이상), Cal Loan(국내 제1.2금융권 및 외국계은행)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Call * 100%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32	0.20	0.21	0.322	33	67	103	180	4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22	0.10	0.24	0.222	23	46	71	125	283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0/04/08~ 2021/04/07	2019/04/08~ 2021/04/07	2018/04/08~ 2021/04/07	2016/04/08~ 2021/04/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9.8.12	0.71	1.07	1.27	1.28	1.33
비교지수(%)	2009.8.12	0.53	0.98	1.19	1.24	1.23
수익률변동성(%)	2003.4.8	0.03	0.06	0.06	0.05	0.12

(주1) 비교지수 : Call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				운용 경력년 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은희	1986	책임(과장)	34	74,543	0.86	0.00	0.86	1.26	4년9개월
성민형	1986	부책임(대리)			0.86	0.00			2년9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ABCP, AB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기초자산 발

	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2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좌
효력발생일	2021.5.18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CMA(M)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CMA 계좌를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	366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58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158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977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AH3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2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T2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V3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V31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	366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58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158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977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AH3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2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T2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V3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V31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3.4.8	최초 설정
2003.6.19	신탁계약 변경
2004.7.5	신탁계약 변경
2005.6.7	신탁계약 변경(Late Trading적용)
2007.3.22	신탁계약 변경(미래가격제 적용)
2009.5.3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변경)
2009.8.10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형으로 변경)
2009.9.29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융투자업개정에 따른 변경)
2010.2.12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7.16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11.17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 추가-Class C-M)
2011.4.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1.5.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1.7.7	투자설명서 갱신
2012.6.19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개정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내용 반영, 위험등급 상세설명 일부 추가 및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추가
2013.4.1	- 집합투자규약 변경 ㅇ 연금저축 전용 클래스 추가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반영 : 법시행령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92조(자산운용보고서) 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 02. 22)사항 반영

2013.5.23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기업공시서식 변경 사항 반영)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13.11.1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반영)
2014.1.15	- 소득세법개정(2014.1.1)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개정 반영
2014.6.9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투자설명서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4.06.01 시행) 사항 반영
2014.12.1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예정 안내(2014.12.22 시행/HSBC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 반영
2015.1.15	책임 및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6.22	- 집합투자규약 변경(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상향조정, 수탁보수 인하 및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규약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5.6.30	-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우주 -> 유승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김경석 -> 박종호
2015.10.8	-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유승태 -> 이우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박종호 -> 김경석
2015.12.4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김경석 -> 류희대
2016.5.13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반영)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규약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6.7.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6등급)
2017.4.1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2017.5.11	-운용팀 변경(채권운용2팀->채권운용1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류희대->성일환)
2017.5.22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2017.7.28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C-E, Class C-PE 신설)
2017.8.7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C-P2, Class C-P2E 신설)
2017.11.1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동부자산운용 -> DB자산운용 · 동부NEW해오름신종MMF제3호 -> DBNEW해오름신종MMF제3호 · www.dongbuam.co.kr -> www.db-asset.co.kr
2018.4.19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17.1.1 시행)
2018.5.21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2019.4.22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집합투자규약 변경 반영(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2019.5.21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2019.6.26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우주 → 김은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성일환 → 성민형)
2019.9.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정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변경 및 투자설명서 반영
2020.4.28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집합투자규약 변경 반영(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반영)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2020.6.12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2021.2.16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1.4.20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2021.5.18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DB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1층(대표전화: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1.4.7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김은희	1986	책임 (과장)	4년 9개월	- DB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성민형	1986	부책임 (대리)	2년 9개월	- DB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 DB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은희	1986	책임 (과장)	34개	74,543억	0.86	0.00	0.86	1.26
성민형	1986	부책임 (대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0.86	0.00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우주	2018.1.22 - 2019.6.25
김은희	2019.6.26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성일환	2018.1.22 - 2019.6.25
성민형	2019.6.26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투자신탁 보수(연,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0.08	0.2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전용	-	-	0.08	0.0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CMA계좌를 보유한 경우	-	-	0.08	0.21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0.08	0.14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0.08	0.1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	-	-	0.08	0.07	0.02	0.02

(C-PE)	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전용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0.08	0.13	0.02	0.0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0.08	0.065	0.02	0.02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CMA(M)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CMA 계좌를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채무증권 (채권 등)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 단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 없음
양도성 예금증서	잔존만기 6월 이내
어음 등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 매도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 이내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사채 등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신용등급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 가능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제1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위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1.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어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이 경우 가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의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 가능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거래 상대방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대여 및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기타	-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 · 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상기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국채증권 투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채무증권 투자비율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채무증권(법 제43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 · 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법 제 71조 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 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2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채권 및 유동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투자, 운용합니다.
채권에의 투자는 국고채, 통안채, 공사채, 은행채(신용등급 AA-이상) 중심으로 투자하고, 유동자산에의 투자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AA-이상) 및 정기예금, CP(A2-이상), CALL LOAN(국내 제1.2금융권 및 외국계은행)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Call * 100% 입니다.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동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DB자산운용 홈페이지(www.db-asset.co.kr)에서 확인가능)

▪ **위험관리 :** 펀드 성격에 맞추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병행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한 단기금융상품의 이자 등의 수익률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ABCP, AB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화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Call 등)에 투자하는 MMF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며,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DB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중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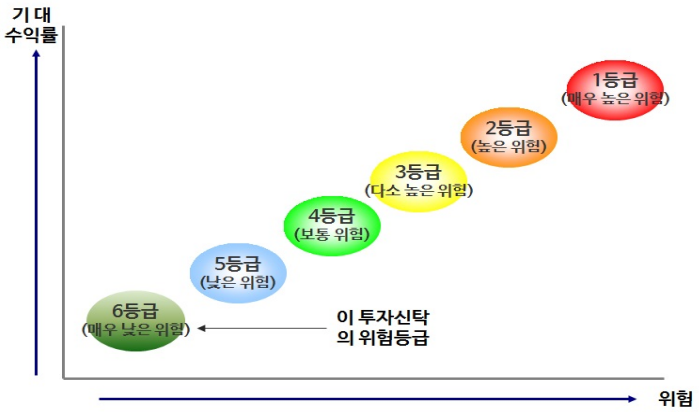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2021.4.7)기준 변동성은 **0.06%**로 아래 기준에 의하여 **6등급(매우 낮은 위험)**입니다.

등급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이

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CP(A3등급)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표준편차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법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CMA계좌를 보유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전용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 5시)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위의 1 및 2 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 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 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 보수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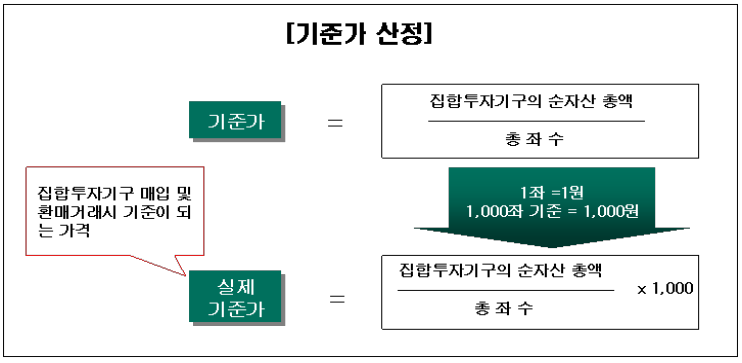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내용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주)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전용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CMA계좌를 보유한 경우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가입 투자자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인터넷가입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	-	-	-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전용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가입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종류)	지급비율(연간, %)								
	운용	판매	수탁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 비용 주1)	총 보수·비용 비율 TER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 비용주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08	0.20	0.02	0.02	0.32	0.002	0.322	0.21	0.0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08	0.00	0.02	0.02	0.12	-	0.120		0.0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0.08	0.21	0.02	0.02	0.33	-	0.330		0.0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08	0.14	0.02	0.02	0.26	0.002	0.262		0.0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08	0.10	0.02	0.02	0.22	0.002	0.222	0.24	0.0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08	0.07	0.02	0.02	0.19	0.002	0.192		0.0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08	0.13	0.02	0.02	0.25	0.002	0.252		0.0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08	0.065	0.02	0.02	0.185	0.002	0.187		0.007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0.4.8~2021.4.7)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주3)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20.4.8~2021.4.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1년 후	2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33	67	103	180	4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12	25	39	68	1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33	68	105	184	4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7	54	84	147	3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3	46	71	125	2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	40	62	108	2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6	52	80	141	3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9	39	60	105	239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ㆍ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 저축 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나이별로 5.5~3.3% 원천징수하고, 1,200 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8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8 기	제 17 기	제 16 기
	2021.04.07	2020.04.07	2019.04.07
운용자산	480,222,762,741	336,419,486,705	302,738,936,622
유가증권	38,049,950,876	12,480,228,585	53,786,936,670
현금 및 예치금	19,618,836,215	450,721,633	20,006,284,458
기타 운용자산	422,553,975,650	323,488,536,487	228,945,715,494
기타자산	588,674,393	716,456,070	820,673,226
자산총계	480,811,437,134	337,135,942,775	303,559,609,848
기타부채	4,921,448,352	5,823,909,234	5,950,244,742
부채총계	4,921,448,352	5,823,909,234	5,950,244,742
원본	475,889,988,782	331,312,033,541	297,609,365,106
자본총계	475,889,988,782	331,312,033,541	297,609,365,106
운용수익	4,086,783,471	5,635,707,669	8,864,769,870
이자수익	4,329,590,446	5,615,695,803	8,728,352,327
매매/평가차익(손)	-242,806,975	20,011,866	136,417,54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9,920,229	20,396,438	35,166,31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26,410,429	9,460,308	21,843,370
기타비용	13,509,800	10,936,130	13,322,940
당기순이익	4,046,863,242	5,615,311,231	8,829,603,56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운용펀드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638,249	638,249	1,159,500	1,168,200	1,500,140	1,511,724	297,609	303,555
2019/04/08~2020/04/07	297,609	297,609	909,120	917,784	875,417	883,879	331,312	337,130
2020/04/08~2021/04/07	331,312	331,312	1,498,358	1,507,795	1,359,598	1,368,169	475,890	480,803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555,481	555,481	1,038,365	1,044,773	1,370,241	1,378,989	230,557	234,408
2019/04/08~2020/04/07	230,557	230,557	711,858	717,302	707,590	713,075	238,337	241,742
2020/04/08~2021/04/07	238,337	238,337	965,059	969,266	922,704	926,732	283,829	285,839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1,689	1,689	662	665	2,360	2,375	18	18
2019/04/08~2020/04/07	18	18	76	77	90	91	4	4
2020/04/08~2021/04/07	4	4	123	124	110	111	17	18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C-M)**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36	36	65	65	89	89	12	12
2019/04/08~2020/04/07	12	12	38	38	50	50	1	1
2020/04/08~2021/04/07	1	1	32	32	30	30	2	2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73,979	73,979	45,481	45,802	73,949	74,455	46,562	47,368
2019/04/08~2020/04/07	46,562	46,562	43,000	43,384	38,036	38,376	52,331	53,111
2020/04/08~2021/04/07	52,331	52,331	73,303	73,647	59,017	59,307	67,394	67,912

(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8,577	8,577	54,430	54,976	43,327	43,742	19,756	20,106
2019/04/08~2020/04/07	19,756	19,756	138,215	139,557	119,386	120,554	38,917	39,512
2020/04/08~2021/04/07	38,917	38,917	447,226	449,707	366,078	368,123	120,631	121,606

(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4/08~2019/04/07	182	182	1,833	1,851	1,125	1,135	891	907
2019/04/08~2020/04/07	891	891	4,827	4,870	4,287	4,327	1,447	1,470
2020/04/08~2021/04/07	1,447	1,447	7,103	7,137	5,653	5,682	2,919	2,943

(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6/05~2019/04/07	0	0	229	230	57	57	172	174
2019/04/08~2020/04/07	172	172	775	783	276	278	674	684
2020/04/08~2021/04/07	674	674	544	546	564	567	663	668

(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05/17~2019/04/07	10	10	931	938	548	554	383	389
2019/04/08~2020/04/07	383	383	1,142	1,153	1,110	1,120	421	428
2020/04/08~2021/04/07	421	421	2,802	2,817	1,647	1,656	1,583	1,596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교지수는 Call*100%로서,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0/04/08~ 2021/04/07	2019/04/08~ 2021/04/07	2018/04/08~ 2021/04/07	2016/04/08~ 2021/04/07	(%)
운용펀드	2003-04-08	1.03	1.39	1.59	1.61	2.99
비교지수	2003-04-08	0.53	0.98	1.19	1.24	2.61
수익률 변동성(%)	2003-04-08	0.03	0.06	0.06	0.05	0.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9-08-12	0.71	1.07	1.27	1.28	1.33
비교지수	2009-08-12	0.53	0.98	1.19	1.24	1.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09-08-13	0.92	1.28	1.47	1.49	1.54
비교지수	2009-08-13	0.53	0.98	1.19	1.24	1.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 (C-M)	2010-11-23	0.77	1.11	1.3	1.3	1.95
비교지수	2010-11-23	0.53	0.98	1.19	1.24	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13-04-02	0.77	1.13	1.33	1.34	1.64
비교지수	2013-04-02	0.53	0.98	1.19	1.24	1.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7-09-05	0.81	1.17	1.37	0	1.4
비교지수	2017-09-05	0.53	0.98	1.19	0	1.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2017-11-13	0.84	1.2	1.4	0	1.43
비교지수	2017-11-13	0.53	0.98	1.19	0	1.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	2018-06-05	0.78	1.14	0	0	1.25
비교지수	2018-06-05	0.53	0.98	0	0	1.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2018-05-17	0.84	1.2	0	0	1.39
비교지수	2018-05-17	0.53	0.98	0	0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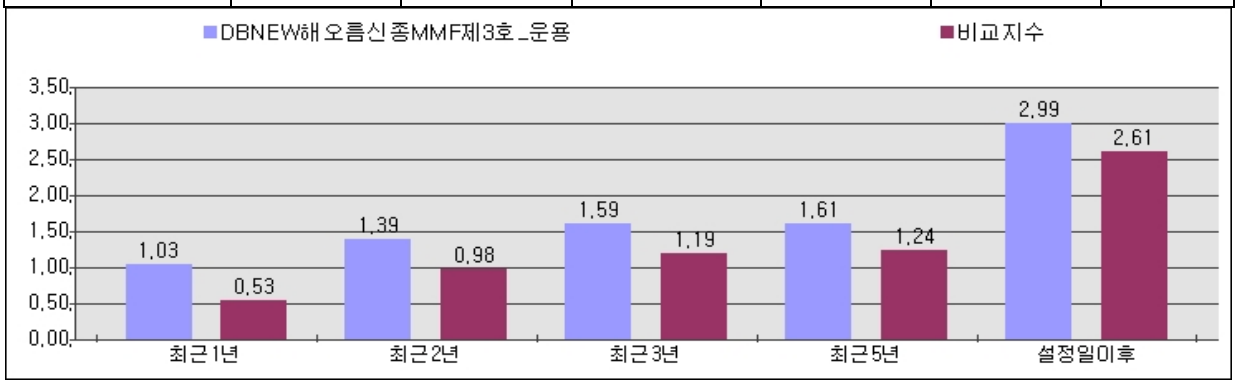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0/04/08~ 2021/04/07	2019/04/08~ 2020/04/07	2018/04/08~ 2019/04/07	2017/04/08~ 2018/04/07	2016/04/08~ 2017/04/07
운용펀드	2003-04-08	1.03	1.76	2.00	1.69	1.58
비교지수	2003-04-08	0.53	1.44	1.61	1.34	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9-08-12	0.71	1.43	1.67	1.36	1.25
비교지수	2009-08-12	0.53	1.44	1.61	1.34	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09-08-13	0.92	1.64	1.87	1.57	1.45
비교지수	2009-08-13	0.53	1.44	1.61	1.34	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MA (C-M)	2010-11-23	0.77	1.44	1.69	1.36	1.25
비교지수	2010-11-23	0.53	1.44	1.61	1.34	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13-04-02	0.77	1.49	1.73	1.42	1.31
비교지수	2013-04-02	0.53	1.44	1.61	1.34	1.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7-09-05	0.81	1.53	1.77	1.57	0
비교지수	2017-09-05	0.53	1.44	1.61	1.4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2017-11-13	0.84	1.56	1.8	0	0
비교지수	2017-11-13	0.53	1.44	1.61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18-06-05	0.78	1.50	1.52	0	0
비교지수	2018-06-05	0.53	1.44	1.62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18-05-17	0.84	1.57	1.82	0	0
비교지수	2018-05-17	0.53	1.44	1.62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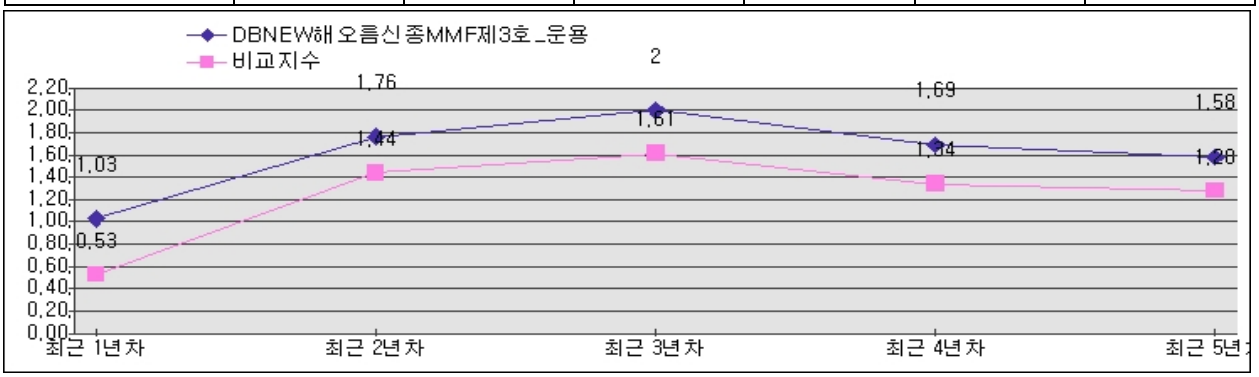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2021.4.7기준)(단위: 백만)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대한민국	0	135,084	222,788	0	0	0	19,639	103,301	480,811
	(0)	(28.1)	(46.34)	(0)	(0)	(0)	(4.08)	(21.48)	(100)
자산합계	0	135,084	222,788	0	0	0	19,639	103,301	480,811
	(0)	(28.1)	(46.34)	(0)	(0)	(0)	(4.08)	(21.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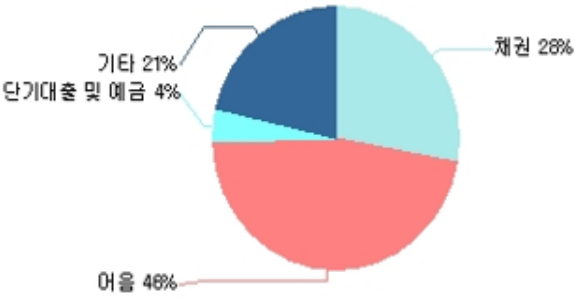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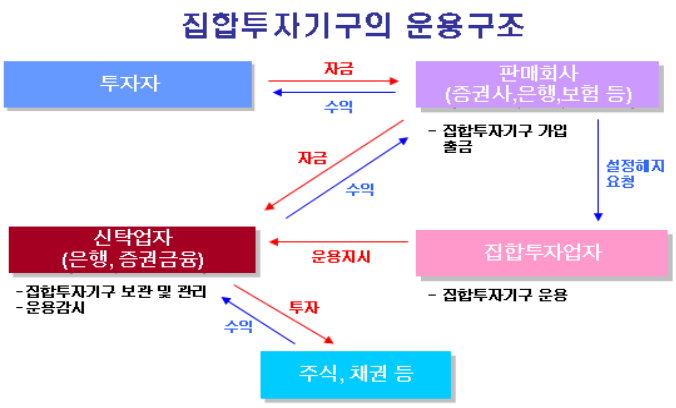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02-787-3700)	www.db-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목	25기	24기
	(2020.12.31)	(2019.12.31)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21,443,684	1,067,221,181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65,107,864	2,533,756,716
Ⅲ. 관계기업투자자산	3,099,660,000	2,832,060,000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7,200,000	417,200,000
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1,979,378,996	48,963,953,566
Ⅵ. 유 형 자 산	17,249,713	42,366,649
Ⅶ. 기타자산 외	2,886,002,462	3,686,002,799
자 산 총 계	63,883,042,719	59,542,560,911
Ⅰ. 기타부채	5,723,002,706	5,300,439,594
부 채 총 계	5,723,002,706	5,300,439,594
Ⅰ. 자 본 금	30,000,000,000	30,000,000,000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1,602,507	-231,602,507
Ⅲ. 이 익 잉 여 금	28,391,642,520	24,473,723,824
자 본 총 계	58,160,040,013	54,242,121,31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3,883,042,719	59,542,560,911

(2)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목	25기 (2020.12.31)	24기 (2019.12.31)
Ⅰ. 영 업 수 익	24,919,931,587	24,058,431,733
II. 영 업 비 용	18,259,027,582	17,742,448,736
Ⅲ. 영 업 이 익	6,660,904,005	6,315,982,997
Ⅳ. 영 업 외 수 익	268,178,064	111,734,935
Ⅴ. 영 업 외 비 용	4,058,258	17,720,027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925,023,811	6,409,997,905
Ⅶ. 법인세비용	1,807,105,115	1,267,466,702
Ⅷ. 당 기 순 이 익	5,117,918,696	5,142,531,203

라. 운용자산규모(2021.4.8 기준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3,656	783	53,623	27,657	6,200	69	16,340	1,579	8,248	118,15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T: 729-8000)	www.keb.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하나펀드서비스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다동) 한외빌딩 9층 (02-757-0393)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 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 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 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